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 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2) 입법예고(2023. 8. 00. ~ 8.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해양수산부령 제 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7조제6항 본문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어업정책과장

· 수산자원정책과장 · 지도교섭과장 · 어선안전정책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어업정책과장 · 수산자원정책과장 · 지도교섭과장 · 어선안전정책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으로,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를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로, “서기관 ·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을 “해양수산사무관 ·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해양수산사무관 ·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기술서기관으로, 운영지원과장 · 해양예보과장 · 수로측량과장 · 국가해양위성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해도수로과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를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운영지원과장 · 해양예보과장 · 수로측량과장 · 국가해양위성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해도수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를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로, “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을 “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행정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로”를 “해양수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를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서기관 ·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을 “공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을 “공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행정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를 “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③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부산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선원해사안전과장·항만물류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부산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해양수산환경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항로표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항로표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계획조사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항만개발과장 및 항만정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3조제2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행정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를 “해양수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기술서기관으로, 지방심판원”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지방심판원”으로, “기술서기관으로, 조사관은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조사관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단서 중 “6명(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

부 칙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방재안전
사무관 1명, 행정주사 · 해양수산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환경주사 · 방재안전주사 · 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
구사 2명, 행정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주사보 · 전
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환경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를 “9명(4급 3명, 5급 1명, 6급 또는 연구사 2명, 7
급 또는 연구사”로 한다.

제42조제2항 단서 중 “1명(7급)”을 “2명(연구관 1명, 7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을 삭제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5조제1항 중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 · 과
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 행정주사 · 해양수산
주사 · 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를 “(5급 1명, 6급”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46조제9항 중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을 “(5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 중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을 “연
구관”으로 한다.

별표 16, 별표 17, 별표 18, 별표 19, 별표 21의2, 별표 24부터 별표 26까
지, 별표 26의2 및 별표 3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599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2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
일반직 계	595
고위공무원단	15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1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3
임기제 서기관(비상안전담당관)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 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53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
전산사무관	3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방재안 전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 산연구관	199

전산주사	1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전산주 사·방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전주사·운전주 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208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 · 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환경주사보·방재안 전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29
행정서기·해양수산서기·전산서기 또는 운전서기	20
행정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4
해양수산연구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2
해양수산연구사	1
기록연구사	1
사무운영서기보	8
수석전문관·행정전문관·해양수산전문관·공업전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2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605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2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
일반직 계	601
고위공무원단	15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1
부이사관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	1
관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2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3
임기제 서기관(비상안전담당관)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	
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	53
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
전산사무관	3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	
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207
전산주사	1
행정주사 · 해양수산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전	
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환경주사 · 방재안전주사	203

· 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행정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주	
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환경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	
구사	32
행정서기 · 해양수산서기 · 전산서기 또는 운전서기	20
행정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4
해양수산연구관 · 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2
해양수산연구사	1
기록연구사	1
사무운영서기보	8
수석전문관 · 행정전문관 · 해양수산전문관 · 공업전	
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관련)

총 계	304
일반직 계	304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3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5
행정주사 · 해양수산주사 · 전산주사 또는 공업주사	82
행정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전산주사보 · 운전주사보 · 방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79
행정서기 · 해양수산서기 · 운전서기 · 방호서기 또는 공업서기	57
행정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 운전서기보 · 방호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14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4
해양수산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32
사무운영서기보	3

국립해양조사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2항 본문 관련)

총 계	255
일반직 계	255
고위공무원단	1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6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공업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8
행정주사 · 해양수산주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80
행정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전산주사보 · 운전주사보 · 위생주사보 · 조리주사보 또는 방호주사보	77
행정서기 · 해양수산서기 · 방송통신서기 · 운전서기 · 위생서기 · 조리서기 또는 방호서기	30
행정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 공업서기보 · 방송통신서기보 · 운전서기보 · 위생서기보 · 조리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23
해양수산연구관	4
해양수산연구사	6

통신운영서기	1
통신운영서기보	1
기계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1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1의2]

<u>어업관리단 공무원 정원표</u> (제42조제3항 단서 관련)	
총계	891
일반직 계	89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3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공업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2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 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42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해양수산주사·방 송통신주사·전산주사·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 주사	170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 사보·방송통신주사보·전산주사보·위생주사보 ·조리주사보·간호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237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해양수산서기·방 송통신서기·위생서기·조리서기·간호서기 또는 운전서기	322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 기보·방송통신서기보·위생서기보·조리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108
선박항해운영주사보	1
수석전문관·행정전문관·해양수산전문관·공업전 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6

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7항 본문 관련)

총계	1,267
일반직 계	1,267
고위공무원단	5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8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7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03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411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349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방송통신서기·환경서기·해양수산서기·운전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221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환경서기보·운전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118

기록연구사	11
기계운영주사보	1
전기운영주사보	1
선박기관운영주사보	1
토목운영서기	1
건축운영서기	1
전기운영서기	2
토목운영서기보	2
전기운영서기보	3
기계운영서기보	1
열관리운영서기보	1
통신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7

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7항 단서 관련)

총계	1,269
일반직 계	1,269
고위공무원단	5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8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7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08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412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351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방송통신서기·환경서기·해양수산서기·운전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215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환경서기보·운전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118
기록연구사	11

기계운영주사보	1
전기운영주사보	1
선박기관운영주사보	1
토목운영서기	1
건축운영서기	1
전기운영서기	2
토목운영서기보	2
전기운영서기보	3
기계운영서기보	1
열관리운영서기보	1
통신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7

해양안전심판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8항 본문 관련)

총계	75
일반직 계	75
고위공무원단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9
과학기술서기관	3
임기제 과학기술서기관(심판관)	8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1
행정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16
행정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9
주사보	8
행정서기 또는 운전서기	7
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1

해양안전심판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8항 단서 관련)

총계	75
일반직 계	75
고위공무원단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9
과학기술서기관	3
임기제 과학기술서기관(심판관)	8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1
행정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17
행정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8
주사보	8
행정서기 또는 운전서기	7
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1

해양수산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45조제2항 및 제45조의
2제3항 관련)

1.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총계	7
일반직 계	7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	4

2.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존속기한: 2023년 12월 28일)

총계	5
일반직 계	5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	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대변인) ① (생략)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으로 보하고, 디지털소통팀장은 <u>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u> 으로 보한다. ③·④ (생략)	제2조(대변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u> ----- ----- <u>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u>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조(감사관) ① (생략)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며, 감사담당관은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③ (생략)	제3조(감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u>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 ③ (생략)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장기전략데이터기획팀장·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은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으로 보하고,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하며, 장기전략데이터 기획팀장은 <u>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u> 으로 보한다.	----- ----- ----- <u>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u> ----- ----- ----- ----- <u>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u> ----- --.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제6조(운영지원과) ----- -- <u>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u> -----.
제7조(해양정책실) ① ~ ⑤ (생 략)	제7조(해양정책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해양정책실에 해양정책과·해양수산물과학기술정책과·해양개발과·해양레저관광과·해양수산생명자원과·해양환경정책과·해양공간정책과·해양보전과·해양생태과·국제협력총괄과·해양영도과 및 통상무역협력과를 두고, 각 과장은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다만, 해양수산생명	⑥ ----- ----- ----- ----- ----- ----- ----- ----- ----- ----- <u>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u> ----- -----.

자원과장은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 <u>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u> -----.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8조(수산정책실) ① ~ ⑤ (생 략)	제8조(수산정책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수산정책실에 수산정책과·유통정책과·수출가공진흥과·소득복지과·원양산업과·수산직불제팀·어업정책과·수산자원정책과·지도교섭과·어선안전정책과·어촌양식정책과·양식산업과 및 어촌어항과를 두되, 수산정책과장·유통정책과장·수출가공진흥과장·소득복지과장·원양산업과장·어촌양식정책과장·양식산업과장 및 어촌어항과장은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으로, 어업정책과장·수산자원정책과장·지도교섭과장·어선안전정책과장은 <u>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u> 으로 보하며, 수산직불제팀장은 <u>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u> 으로 보한다.	⑥ ----- ----- ----- ----- ----- ----- ----- ----- ----- ----- <u>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u> 으로, <u>어업정책과장·수산자원정책과장·지도교섭과장·어선안전정책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u> ----- ----- <u>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u> ----- --.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9조(해운물류국) ① (생 략)	제9조(해운물류국)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운물류국에 해운정책과 · 연안해운과 · 선원정책과 · 항만물류기획과 · 항만운영과 및 스마트해운물류팀을 두며, 각 과장은 <u>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으로 보하고, 스마트해운물류팀장은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u> 으로 보한다.	② ----- ----- ----- ----- -----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해사안전국) ① (생 략)	제10조(해사안전국)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사안전국에 해사안전정책과 · 해사산업기술과 · 해사안전관리과 · 항로표지과 및 첨단해양교통관리팀을 두되, 각 과장은 <u>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으로 보하고,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u> 으로 보한다.	② ----- ----- ----- ----- -----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항만국) ① (생 략)	제11조(항만국) ① (현행과 같음)
② 항만국에 항만정책과 · 항만개발과 · 항만투자협력과 · 항만연안재생과 및 항만기술안전과를 두되, 각 과장은 <u>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② ----- ----- -----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① (생 략)	제12조(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운영지원과 · 검역검사과 · 품질관리과 및 수산방역과를 두며, 운영지원과장은 <u>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으로, 검역검사과장, 품질관리과장 및 수산방역과장은 <u>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u> 으로 보한다.	② ----- ----- -----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지원) ① 지원장은 <u>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u> 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 및 인천 지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제14조(지원) ① ----- <u>해양수산사무관 · 행정사무관</u> -----.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5조(국립해양조사원) ① (생략)

② 국립해양조사원에 운영지원과·해양관측과·해양예보과·수로측량과·해도수로과·해양과학조사연구실 및 국가해양위성센터를 두되, 해양관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운영지원과장·해양예보과장·수로측량과장·국가해양위성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해도수로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은 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⑨ (생략)

제16조(해양조사사무소) ① 남해 해양조사사무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동해 및 서

----- 과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해양수산사무관·행정사무관 -----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국립해양조사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운영지원과장·해양예보과장·수로측량과장·국가해양위성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해도수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6조(해양조사사무소) ① -----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해 해양조사사무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해양조사사무소에 해양과와 측량과를 두되, 해양과장은 행정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로, 측량과장은 해양수산주사로로 보한다. 다만, 남해해양조사사무소의 해양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남해해양조사사무소의 측량과장은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④ (생략)

제18조(어업관리단) ① 단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다만, 동해어업관리단의 단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어업관리단에 운영지원과·어업지도과 및 안전정보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공

----- 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

② -----
----- 해양수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어업관리단) ①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
-----.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
-----.

② -----

----- 공업사무관·해양

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문관으로 보한다.

③ ~ ⑦ (생략)

제19조(조업감시센터) ① 조업감시센터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 ④ (생략)

제22조(지방해양수산청) ① 부산·인천·여수 및 마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울산·동해·군산·목포·포항·평택 및 대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생략)

③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부산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수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 -----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조업감시센터) ① -----
----- 공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지방해양수산청) ① -----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② (현행과 같음)

③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부산 및 인천지방해

선원해사안전과장·항만물류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부산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항로표지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항로표지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계획조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항만개발과장 및 항만정비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부산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제외한 지방해양수산청의 운

양수산청의 선원해사안전과장·항만물류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부산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해양수산환경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항로표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항로표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계획조사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항만개발과장 및 항만정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

② 수산연구소에 소장 각 1명을 두고, 동해·서해·남해 수산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남동해수산연구소장은 <u>기술서기관</u>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으로, 아열대수산연구소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같음) ② ----- ----- ----- ----- ----- ----- <u>과학기술서기관</u> ----- ----- ----- -----.	<u>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전주사·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2명,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환경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3명</u>)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 ----- ----- ----- ----- ----- ----- ----- -----.
③·④ (생략) 제41조(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6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으며, 별표 17의 정원 중 6명(<u>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명,</u>	③·④ (현행과 같음) 제41조(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u>9명(4급 3명, 5급 1명, 6급 또는 연구사 2명, 7급 또는 연구사</u> -----	②·③ (생략) 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국립해양조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9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9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0과 같으며, 별표 20의 정원 중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 ⑪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2명(연구관 1명, 7급</u> ----- -----. ③ ~ ⑪ (현행과 같음)

⑩ ~ ⑭ (생 략)	⑩ ~ ⑭ (현행과 같음)
⑮ 항생제 내성의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수산물과학원에 두며, 별표 31의 정원 1명(해양수산연구원 또는 보건연구원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⑮ ----- ----- ----- ----- -----연 구관 ----- ----- ----- -----.